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6. . . (제 회)	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
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방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휴가제도 관련 법령 적용 간 미비점 등을 개선·보완하고, 군 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함.

3. 주요내용

가. 교육훈련기간의 연가 차감 개선(안 제10조제5항)교육훈련기간의 연가 차감 개선(안 제10조제5항)

‘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기간’ 시 차감되는 연가를 軍 외부기관 교육훈련 시에만 차감하도록 개선

나. 연가저축 제도 개선(안 제10조의2)

연가보상비가 선지급되는 현행 연가 제도를 연가보상비와 연가 저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연가소멸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

다. 청원휴가 제도 개선(안 제12조)

(외)증조부모 사망휴가 신설, 유·사·조산 위험 시 자택가료 (10일)를 승인할 수 있도록 개선

라. 임기제 전역하는 군인의 전역 전 휴가 개선(안 제13조제3항)

임기제 전역하는 군인도 전역 전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

마. 보상휴가 부여기준 개선(안 제13조제4항)

보상휴가 부여기준은 각 군 규정에서 기술하고 있어, 실정과 맞게 개정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인사혁신처 등 관련 부처와 협의 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

2) 입법예고 예정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아니한다”를 “아니한다.(단, 제2호, 제3호의 경우 주간 근무를 하면서 야간에 교육을 받은 기간은 제외한다)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외국에서 받은 1개월 이상 위탁교육 기간
2. 국내의 군 외 교육기관에서 받은 1개월 이상 위탁교육 기간
3. 국내의 군 교육기관에서 학위과정의 교육을 받은 1개월 이상 기간

제10조의2 중 “제10조제6항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받고 남은 연가 일수 중 국방부장관”을 “국방부장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이월·저축한 연가의 소멸에 관하여는 국방부 장관이 정한다.
제12조제1항제1호의2 중 “조부모,”를 “조부모, 외조부모,”로, “조부모”를 “조부모, 외조부모”로 하고,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단, 자택가료는 제외한다.

제12조제1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7호 중 “조부모나 외조부모”를 “조부모, 증조부모나 외조부모, 외증조부모”로 한다.

1의3. 배우자가 의료기관의 진단서 상 유·사산 또는 조산의 위험으로
자택가료가 필요할 때: 연간 10일 이내(단, 제1호의2의 청원휴가 기간에 합산한다.)

제13조제3항 중 “명예전역 또는 정년전역 하는”을 “명예전역, 정년전역, 군인사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전역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”을 “각 군 참모총장(해병대의 경우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)이 정하는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연가 등) ① ~ ④ (생 략)	제10조(연가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4항 에 따른 연가의 승인 일수의 계 산식에서 실제로 복무한 개월 수에 포함하지 <u>아니한다</u> .	⑤ ----- ----- ----- ----- <u>아니한다.(단, 제2 호, 제3호의 경우 주간 근무를 하면서 야간에 교육을 받은 기 간은 제외한다)</u>
1.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기간	1. 외국에서 받은 1개월 이상 위 탁교육 기간
<u><신 설></u>	2. 국내의 군 외 교육기관에서 받은 1개월 이상 위탁교육 기 간
<u><신 설></u>	3. 국내의 군 교육기관에서 학 위과정의 교육을 받은 1개월 이상 기간
2. · 3. (생 략)	4. · 5. (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)
⑥ ~ ⑧ (생 략)	⑥ ~ ⑧ (현행과 같음)
제10조의2(연가의 저축) 하사 이 상 군인은 <u>제10조제6항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받고 남은 연 가 일수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</u>	제10조의2(연가의 저축) ----- ----- <u>국방부장관</u> ----- ----- -----

는 범위의 연가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·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	----- ----- ----- 이 경우 이월·저축한 연가의 소멸에 관하여는 국방부 장관이 정한다.
제12조(청원휴가) ① 지휘관은 군인이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. 이 경우 하사 이상 군인의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청원휴가는 1시간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, 누계 8시간을 청원휴가 1일로 계산한다. 1. (생 략) 1의2. 사고나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<u>조부모</u>, 부모(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), 배우자,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(<u>조부모</u>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한 경우는 「군인사법 시행령」 제54조의5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): 연간 30일 이내 <단서 신설> <신 설>	제12조(청원휴가) ① ----- ----- ----- 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1의2. ----- ----- <u>조부모, 외조부모</u>, ----- ----- ----- -----<u>조부모, 외조부모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단, <u>자택가료</u>는 제외한다. 1의3. 배우자가 의료기관의 진

2. ~ 6. (생략) 7. 본인 및 배우자의 <u>조부모나 외조부모</u>가 사망한 때: 3일 이내 8. ~ 10. (생략) ② ~ ⑮ (생략)	<u>단서 상 유·사산 또는 조산의 위험으로 자택가료가 필요할 때: 연간 10일 이내(단, 제1호의2의 청원휴가 기간에 합산한다.)</u> 2. ~ 6. (현행과 같음) 7. ----- <u>조부모, 증조부모나 외조부모, 외증조부모</u>----- 8. ~ 10. (현행과 같음) ② ~ ⑮ (현행과 같음)
제13조(특별휴가) ①·② (생략) ③ 지휘관은 <u>명예전역 또는 정년전역 하는 군인</u>에 대하여 3개월 이내에서 전역 전 휴가를 줄 수 있다. ④ 지휘관은 전방 경계업무 등으로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군인으로서 <u>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군인</u>에 대하여 한 달에 3일의 범위에서 보상휴가를 줄 수 있다. ⑤ (생략)	제13조(특별휴가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<u>명예전역, 정년전역, 군인사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전역하는</u> -----. ④ ----- ----- <u>각 군 참모총장(해병대의 경우 해병대 사령관을 말한다)</u>이 정하는 -----. ⑤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방부 병영문화혁신담당관	
연 락 처	(02) 748 - 5167